

[사 건 명] 행심 2018 - 3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학년때 피해학생의 따귀를 때렸고, 2학년때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3학년때 피해학생을 왕따 시켰고, 놀이터에서 맞장을 뜨자고 하였으며, 다른 학생의 집에서 욕을 하고, 복지관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과 뱃속에 있는 동생의 욕을 하였으며, 겨울방학때는 피해학생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였다.

다. 2018. 3. 22.경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팽이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팽이판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라. 2018. 4.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에서 청구인에게 ‘전학,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처분에 대하여 재심 청구하여 2018. 5.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전학처분은 초등학생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전학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상대학생과의 이격거리, 통학에 따른 조건등 많은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확인하여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학폭위 회의록과 재심결정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학생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였다.

나. 실제로 청구인도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목격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다. 학폭위 처분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학처분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실제 처분과 관련된 내용에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치원인 및 내용이 없이 내려졌고, 진행과정 및 처분의 판단에서 많은 부분 문제가 있다.

라. 진술서에도 나와 있듯이 청구인과 피해학생과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욕하면서 놀리고 싸우는 등 행동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전학처분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마. 재심결정에서도 본 사안의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할 만큼 위험한 행동 또는 전학처분을 받을 만큼의 매우 위험하거나 위급하게 두 학생을 격리하여야하는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학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 사건 처분은 목격학생 진술서, 피해·가해학생 진술 및 진술서, 관련 증거자료와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한 질문과 답변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립하고 내린 조치이며, ‘학폭법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결정된 조치이다.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된 자의 배정원칙은 교육감(교육장)이 배정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대학생과의 이격거리 등 통학에 따른 조건을 검토하고 전학조치를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다.

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에서부터 사안조사 과정 및 학폭위에 청구인과 보호자는 함께 참석하여 진술하고 사안내용을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였고, 학폭위 참석 통지서에 명시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지하고 조치결과 통지서에 조치원인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본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조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학폭위에서 위원들은 기본 판단요소 각각의 점수와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여 최종점수를 판정하였고, 이는 학폭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 진술서 및 당사자 제출자료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학을 결정하였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 및 증거자료 등, 그리고 청구인과 법정대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의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3. 22.경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팽이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팽이판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전에도 피해학생과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1학년때 피해학생의 따귀를 때리고, 3학년때 피해학생을 왕따 시키고, 놀이터에서 맞장을 뜨자고 하고, 복지관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과 뱃속에 있는 동생의 욕을 하고, 겨울방학 때는 피해학생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강요한 부분과 관련하여는 2년이상 경과하였을뿐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

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2018. 3. 22.경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팽이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팽이판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전에도 피해학생과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욕을 한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전학처분은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고 할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폭력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되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